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13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 및 제29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김○빈	'97.12.24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필수 방문상담 의무 불이행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 문 부재	충북 청주시 흥덕구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6.07.13. ~ 2026.07.28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고용센터 김유정(Tel. 043-230-67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